

2021학년도 비대면 학부모총회 - 학부모연수 안내 -

우)15064 경기도 시용시 중심상가로 257(정왕동) TEL: 070-7096-7803

제 2021 - 33호 발송: 2021. 3. 24.



1. 학생인권교육 학부모연수

1 목적

- 1. 인권교육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양성
- 2. 학교공동체 인권신장을 통한 소통, 자율, 책임이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실현

2 학생인권 보장과 제한

-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인권 인정
- 2. 기본권 제한(학생을 지도할 때)의 기본 원칙
 - 가.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목적의 정당성)
 - 나. 법령과 학칙에 정한 절차 준수(방법의 적정성)
 - 다.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수단의 적합성)
 - 라. 학생인권 제한은 필요 범위 내 최소화(침해의 최소성)

3 쉽게 풀어 쓴 학생인권 조례

제 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참여로 제정, 개정된 학교규정의 절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4조(교육공동체 상호간의 인권존중)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교는 성별, 성적, 용모, 장애, 가족환경, 징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제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교는 장애, 다문화 가정, 전문계, 예체능계, 학습 부적응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통합폭력예방교육 학부모연수[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모님의 관심으로 예방하기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주 사소한 장난이란 없습니다.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학교폭력 피해 징후	학교폭력 가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5.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6. 멍하게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 금이 많이 부과된다. 10.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한다. 11.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1.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2.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3.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4.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다. 5.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다. 6.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갖고 다닌다. 7. 자기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8.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9.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10.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닌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가. 따돌림, 서로 배려하는 생활태도로 예방할 수 있어요

- 겸손한 생활 태도로 친구를 사귀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 남을 먼저 배려하고,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의 메모나 휴대폰 사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녀와 어울리는 친구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나. 언어폭력, 부모님의 모범으로 순화시킬 수 있어요

-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부모님의 언어, 자녀 언어생활의 거울입니다.
- 자녀 말에 상처 주는 말은 삼가 주시고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게 말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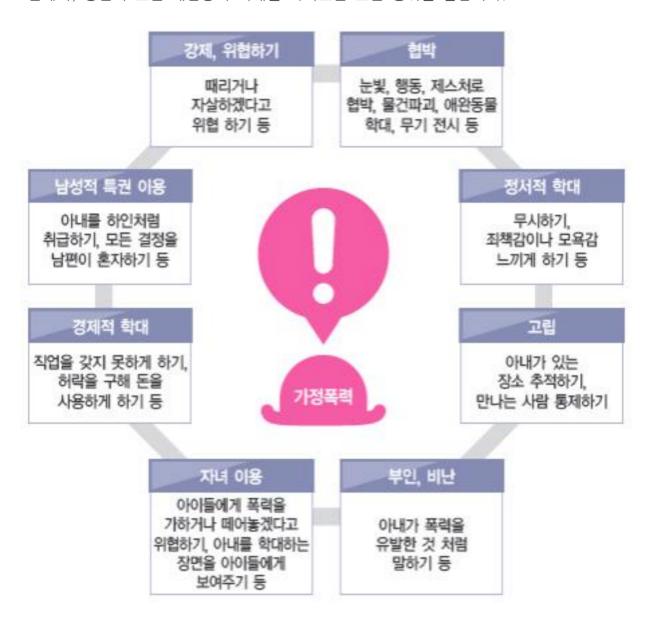
다. 사이버 폭력, 상호 존중으로 근절시킬 수 있어요

- 사이버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세요.
- 인터넷게임, 채팅, 블로그, 휴대폰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 위험한 웹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2

1.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 발생 시 이렇게

-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1. 아동학대 신고요령

■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
-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예: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 2단계 :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하기(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 협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3단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 피해아동 보호절차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577-1391, 129)
-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시 사례판정

-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
-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조치결정

- 피해아동: 가정내보호, 격리보호, 타기관의뢰
 " 격리보호시 한대아동저당그룹홍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 학대행위자: 상담및교육,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고발지원 등 •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 등
- 기타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가사지원) 등

3.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교육 학부모연수

1 자살 요인

- 1)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우울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 경제궁핍.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3)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잔소리와 꾸중이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4)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자 보도가 청소년 자살을 유발시키고 있음
- 5) 고층아파트 주거환경이 청소년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6)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일이 있음

지살 경고 표시

- 1)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
- 2)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그만 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 3) 성격이 갑자기 변하고 성적이 부진 해진다.
- 4) 자살을 표현하는 경우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잠들어 깨지 않으면 좋겠다." 등의 메모)
- 5)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
- 6)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 7)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 8)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결석. 가출하는 경우
- 9)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변화 등

3 대용 방법

- 1)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
- 2) 반드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자살을 시도하는 십대는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제에 있는 원인을 파악,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당사자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도록 도와준다.
- 5)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비판 / 충고 / 설교하지 말고 경청하기
 - 학생이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열어 놓기
-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자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보살펴주기

※ 도움 청할 수 있는 기관

- 생명의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카운셀 24(02-715-8600 : www.counsel24.com)
- 한국자살예방협회(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1388, 02-730-2000 : www.kyci.or.kr)

4. 교권보호교육 학부모연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를 [교원지위법] 이라고도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10가지 유형

항목 번호	관련법	침해행위 유형	예시
1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신체 또는 건강을 훼손하거나 힘을 행사하는 행위 ※오랜 시간 협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케 하는 행위
2	형법제30장	협박의 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로 겁을 주는 행위 ※근거 없이 교사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형사고소, 민 원제기, 언론제보 등을 하겠다고 한 경우 ※외압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 경우
3	형법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부정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도록하는 행위 ※특정 교사의 좋지 않은 내용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수의 사람이 있는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특정 교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얘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는 행위(상스러운 욕설, 특정 교사에 대한 비하발언을 SNS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의 메신저 채팅방을통해 유포한 경우)
4	형법제42장	손괴의 죄	※물건을 원래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로(학교 내, 외벽에 낙서, 유리창이나 문을 깨는 행위, 재상 도 는 위자를 던져 망가뜨린 경우, 망가지지 않아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해당됨)
5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1항	성폭력범죄	※공연음란행위 ※교사의 신체 일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7제1항	불법정보유통죄	※특정 교사가 폭행했다, 차별했다는 내용 등을 SNS에 게재하거나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 여버리겠다'등의 내용을 전송한 경우
7	형법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형법제2조	교원에게 성적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을 주는 죄	※성적 언동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 말을 하는 행위
9	형법제2조	반복적으로 부당하 게 교육활동에 대 해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방법, 내용, 학급경영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특정 내용 없이 퇴근 후 전화나 문자를 하는 행위
10	형법제2조	학교장이 (교육공 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 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함.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5. 스마트폰 중독예방에 관한 학부모 연수

1.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스마트폰 중독의 유형

스마트폰 중독 유형에는 게임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u>게임 중독,</u> 문자 혹은 영상대화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u>SNS 중독</u>, 음란물을 보거나 각종 미디어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u>미디어 중독</u>, 특정한 지 식과 정보를 설정하지 않고, 검색 자체에 병적으로 몰두하는 **검색중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영향으로 가정 내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동의 장시간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 및 위험 요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 같은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외국의 실 사례로 스마트폰에 중독된 다니엘이라는 3세 아이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식사도 거른 체 소변을 참다가 바지에 실례를 하는 등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부모가 스마트폰을 뺏기만 하면 울고불고 악을 쓰며 막무가내로 주먹을 퍼붓고 갖은 욕설을 해 댔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니엘은 검사결과 시력과 척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두뇌발달에도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은 무섭게 달라지고 있으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없습니다. 10~30대는 스마트폰을 평균 3~6분에한 번씩 만지는데 걸을 때, 화장실 갈 때,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 살 배기도 게임을 하려고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찾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강박적 집착은 스마트폰에 늘 마음이 쏠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다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 등으로 과도한 긴장과 흥분,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천천히 안정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스마트폰 이용이 필요합니다.

3.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

집중력 저하는 스마트폰에 병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 학원에서 수업시간이어도 채팅이나 메신저의 메시지가 오거나 푸시기능(알람)이 뜰 때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
- 식사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식사를 한다.
- 가족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쥔 채 대화하거나. 확인한다.
- 부모님이 돌아오셔도 스마트폰을 할 때는 인사를 하러 나가지 않는다.
- 숙제나 과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 친구들과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한다.

위와 같은 행동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현상의 예입니다.

4. 스마트폰 중독 예방!!

이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앱을 활용 합니다.
- 두 번째, 스마트폰 이젠 필요할 때에만 사용합시다.
- 세 번째,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합시다.
- 네 번째, 스마트폰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 다섯 번째,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합시다.
- 여섯 번째,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꺼두세요.
- 일곱 번째,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합시다.
- 여덟 번째, 스트레칭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 주어요.

5.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조언

스마트폰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합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학습용 외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사용금지구역이나 금 지시간대를 설정하고,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취미를 가지면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취미를 찾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관계를 강화합시다.

6.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학교행사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교차 등교로 원격 수업 전환 및 일정 변경 예정

- 가.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 실시 학급별 재량시간 활용
- 나. 가정과 연계한 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
- 1) 일시: 2020. 9월중
- 2) 대상 : 4, 5, 6학년
- 3) 행사내용
 - 스마트폰 이별 주간 운영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급-가정 스마트폰 자율 운영 실천 규칙 제정
- 다. 2020학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4학년)
- 1) 목적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인터넷(게임)및 스마트폰 중 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개선 유도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상담·치료지원
- 2) 조사대상 : 전국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 3)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웹기반의 설문 시스템 운영)
- 4) 조사기간 : 미정 (추후 안내 예정)

6.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탁금지법 학부모 연수

□ 기본방향

목표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중심의 경기교육 실현



기본방 향 선생님·학부모·학생 간의 투명성·신뢰성·만족도 제고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 유도

□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 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 -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시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여 집행
 - ◎ 교직원 등이
 -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 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 용목 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 학교행사(운동회, 졸업식 등) 및 운동부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음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 일부 학교관리자 및 운동부 지도자의 묵인·방치로 인해, 경비수납과 집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운영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체육 진흥법(2017.10.19.시행)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의 장은 <u>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u>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O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각종 포상 추천 제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리, 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 ※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중(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7. 청탁금지법 학부모 연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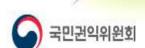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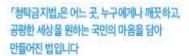
청렴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제1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작자동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동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죠? 청탁금지법 FAQ



①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인가요?

**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부정황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② 공직자 동안 친구와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제가 계산하면 반드시 처벌인가요?

아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재한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선물,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아납니다.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EL:1044/200-7619 FAX:(044)200-7939 www.acrc.go.kr

8. 공교육정상화(선행교육 근절) 학부모 연수



V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 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면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하습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위한 것입니다.
- Q.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판성한 후 에는 계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 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래를 여는 행복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 만들기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공교육정상화법이란?



II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Ⅲ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0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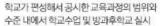
그동안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정상화를 통해 선행교육으로 인해 나타났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 들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공교육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입학예정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입학예정학생 대상 반편성고사 평가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설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실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조치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시행 단위	Ŧ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조 - 20 - 그 50 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 학 생	교과 평가 (지띨·수행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